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개인사업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30.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6. 7. 1.(수) ~ '26. 12. 18.(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대수 :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반기 전기차 보급 지원

※ 중·대형 전기승합차는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

※ 어린이통학용 버스는 지자체 보조 신청

○ 1회 구매가능 대수 : 승용 50대, 화물 50대, 소형 승합 50대

※ 다회 신청에 따른 누적 대수는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③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 ④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소형 승합)를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리스·렌탈(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 리스) 사업 목적 구매 포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지자체 보조 신청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①택시법인, ②전기승용·전기화물·소형 전기승합을 1대만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 ③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 ④어린이통학용 전기승합을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가능

- 신청자격(필수조건)

-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②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 사항 동의서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서식 확인 및 서명(별지 서식)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국비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단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중·대형	최대 580만원	대 형	최대 6,000만원	소 형	최대 1,500만원
		중 형	최대 4,000만원		
소 형	최대 530만원	소 형	최대 1,050만원		
		경 형	최대 770만원		
초소형	200만원(정액)	초소형	380만원(정액)		

○ 추가보조금

구 분		추가 지원
전기 승용	중·대형, 소형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리스·렌탈)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리스·렌탈 사업목적 구매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차종별 국비보조금 비례 차등 지원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5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전기 화물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국비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 국비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택배용 차량*) 국비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23. 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 없음.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5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5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전환지원금은 지자체에 보조를 신청하는 개인 구매건에 한하여 지급

4.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신청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www.ev.or.kr)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 기후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정 차종에 한하여 신청 및 접수 가능

※ 출고·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②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신청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추가보조금 지원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 전기택시/리스·렌탈/소상공인/초소형 거점사업/택배용/경유화물차 폐차 등

※ 세부내용은 [붙임1] 제출서류 안내 참고

- ③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기한 한시적 연장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기후부 승인순

5.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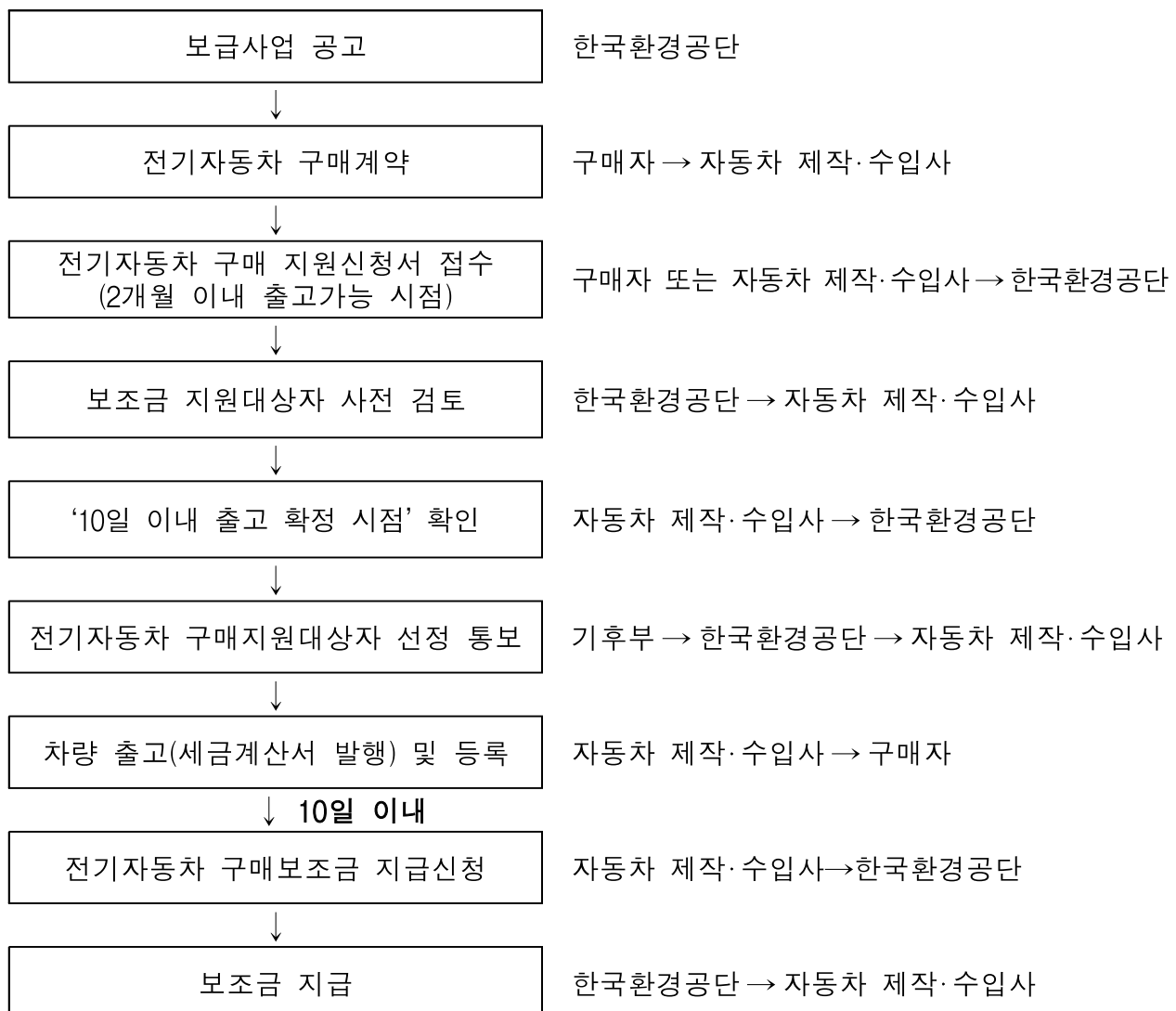
○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www.ev.or.kr)으로 신청

* 자동차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세금계산서 각 1부

※ 제작·수입사별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은 시스템 등록하여 사용

○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통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① 각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본사는 보조금 지급 최초 신청 이전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직인 포함 작성하여 nkm1201@keco.or.kr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②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③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 지원대상 차량의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후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④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4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⑤ 전기차 신청대수는 보조금 지급절차 중 '전기자동차 구매계약'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동일하여야 함.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 (예시)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전기차 10대를 계약 체결하고 지원 신청하여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은 후 차량 9대 또는 11대 출고 후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⑥ 보조금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보조금 지급신청 기한 내 미접수 등) 허위정보 기재 등 신청내용과 상이할 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 차량 출고일 = 세금계산서 발행일
- ⑦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 등에 따라 국가 지원사업 등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 ⑧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름.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함.

< 등록말소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②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등록말소를 하고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조문의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 등이 관리되는 경우 예외적 말소자로 보며, 임시운행기간을 후속 운행기간으로 간주

※ '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 5. 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정상채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한국환경공단 (☎ 032-590-3684)으로 문의

※ 붙임 :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 별지 서식 [제1호]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제2호]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사업자)
[제3호]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
[제4호]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
[제5호]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제6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제7호] 전기화물차 보조금 환수 요청서.

제출서류 안내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www.ev.or.kr)에 제출]

□ 구매지원 신청 시

○ 공통 제출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사업자)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③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서류 제출

(첫 페이지, 사용본거지 증빙 페이지 및 마지막 페이지는 필수 첨부)

** 사용인감계는 지원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법인인감증명서와 상이할 경우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용으로 제출(열람용 승인 불가)

④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용으로 제출(열람용 승인 불가)

⑤ (전기화물차)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신청 시 제출 가능)

* 전기화물차 신청자 모두 작성, 구매 지원신청서 뒤에 함께 첨부

○ 추가지원금 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①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택시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제출

② (리스·렌탈) 리스·렌탈 계약서* 및 리스·렌탈 이용자 증빙서류**

* 실사용자명, 차종명 및 약정내용(차량금액 등) 포함

** 실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제출용으로 제출(열람용 승인 불가)

- ③ (전기차 재구매) 자동차등록증(기존 노후전기차), BMS 업데이트 불가능 증빙서류(보조금 지원신청 시 제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 가능)
- ④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명시)
* 신청일 기준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승인 불가
- ⑤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최초, 변경)
※ 지원신청 단계에서 화물운송허가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급) 제출 후 지급 신청 단계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제출 가능
- ⑥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 가능)
- ⑦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⑧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공통 제출

※ 제작·수입사별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은 시스템 등록하여 사용

①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

※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이메일(nkm1201@keco.or.kr)로 1회 제출(대리점 추가 제출 불필요)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③ 전자세금계산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공통	☐ 해당없음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참여자						
	승용	☐ 택시(중소기업) ☐ 리스·렌탈 사업 ☐ 전기차 재구매						
	화물	☐ 소상공인 ☐ 농업인 ☐ 택배용 ☐ 경유화물차 보유자 (보유수량: 00대 / 폐차: 00대 / 폐차 미이행: 00대)						
주 소 (등록주소지)								
담당자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별도 배정수량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6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공통	☐ 해당없음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참여자		
	승용	☐ 택시 ☐ 리스·렌탈 사업 ☐ 전기차 재구매		
	화물	☐ 소상공인 ☐ 농업인 ☐ 택배용 ☐ 경유화물차 보유자 (보유수량: 00대 / 폐차: 00대 / 폐차 미이행: 00대)		

주 소
(등록주소지)

담당자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 (인,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별도 배정물량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6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

신청자 (제작·수입사)	법인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지정 등록을 신청하니 당사의 전 영업대리점에서 신청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매회 본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전기차 제작·수입사 : _____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4호 서식]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

법 인 명 (업 체 명)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경유 화물차 차량 정보				
구 분	① 경유 화물차 차량번호	②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여부	③ 등록말소일 (폐차 이행)	비 고
보유 현황			2026.00.00.	
유 의 사 항				
① 보유 또는 '23.2.13 이후 폐차한 경유화물차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② 보조금 지급신청 시까지 보유 경유 화물차 폐차를 완료하여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 '○' 기재, 폐차 미이행으로 계속 소유하여 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할 경우 'X' 기재 ③ 폐차 완료 차량의 등록말소일 기재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거짓된 정보 기재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등에 있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소유주)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 승용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법 인 명 :
 2. 성명(대표자) : (사업자번호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 별첨. 사업계획서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법인명 (업체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소(예정)일				
말 소 사 유	☐ 수출 ☐ 폐차 [☐ 교통사고, ☐ 기타(사유 작성)]			
운행불가일	교통사고 시 작성		보 상 금 액	교통사고 시 작성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서류 등 - (교통사고 시) 보험가입증명서, 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고 사진 등				

[별지 제7호 서식]

전기화물차 보조금 환수 요청서

매도자	법인명 (업체명)		매수자	성명/법인명 (업체명)	
	연락처			연락처	
	주 소			주 소	
차 량 정 보					
차 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사 유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u>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u>하여야 합니다.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환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운행 거리 증빙자료 등					